

사단법인 우리누리 청소년회 정관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 칭)

이 법인은 '사단법인 우리누리청소년회'(이하 "법인")라 칭한다

제 2 조 (사무소)

- ①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086 에 둔다.
- ② 법인은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 및 국내/외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

제 3 조 (목 적)

이 법인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및 국가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청소년으로 자라도록 양육 및 성장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질과 잠재력을 개발하고, 공동체 내에서의 협동적인 관계를 통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며, 청소년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 (사 업)

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1. 청소년개발사업(특기,적성,진로개발) 및 후원연계사업
2. 청소년개발을 위한 교육(인성,교양,놀이문화,수련활동)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
3.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사업(금연프로그램 등) 및 부모교육사업
4. 비장애,장애청소년 통합교육 및 연구, 지원사업
5. 청소년 국제 교류사업
6. 기타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(수익사업 포함)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 (회원의 자격, 종류 및 가입)

-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동의하고, 이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.
- 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3종류로 구분한다.
 1. 정 회 원: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이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한 청소년
 2. 보통회원: 이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한 25세 이상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자

3. 명예회원: 이 법인의 목적에 부합되는 자 또는 이 법인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
- ③ 이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신청서를 이 법인에 제출하고,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6 조 (회원의 공통된 권리 및 의무)

-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사업, 행사 또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- ② 이 법인의 회원은 이 정관, 제규정 및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.

제 7 조 (보통회원과 명예회원의 권리 및 의무)

- ① 보통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1인 1의결권을 갖는다.
- ② 보통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- ③ 보통회원은 매월 회비 100,000원 이상을 납입하여야 한다. 납입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 8 조 (회원의 가입, 탈퇴 및 자격 상실)

이 법인의 회원은 탈퇴서를 이 법인에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제 9 조 (제 명)

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.

1. 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
2.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

제 3 장 임 원 및 직 원

제 10 조 (임원의 종류 및 임원 수)

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: 1명
2. 이사: 5명 이상 12명 이내 (이사장을 포함)
3. 감사: 2명 이내
4. 고문: 약간명

제 11 조 (임원의 선임)

- ① 이사 및 감사는 보통회원 및 명예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.
-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- ③ 이사와 감사는 이를 겸직 할 수 없다.

제 12 조 (임원의 직무)

-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,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행한다.

제 13 조 (임원의 임기)

-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고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4 조 (임기 만료 및 직무대행)

- ① 임원의 사임 또는 임기 만료의 경우,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15 조 (자격상실에 의한 퇴임)

이사 또는 감사가 회원의 자격을 잃은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.

제 16 조 (임원의 해임)

임원의 해임에 대하여는 이 정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7 조 (고 문)

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하고, 이사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문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.

제 18 조 (직원 등)

- ① 이 법인은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.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② 이 법인은 국제교류부, 기획부, 교육부, 행정부, 사회복지부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서를 둔다. 각 부서의 부서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.

- ③ 이 법인은 사회복지 전문영역별(아동, 청소년, 장애인, 부량인, 부녀복지, 노인복지 등)로 연구원을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- ④ 각 부서의 구성, 업무 및 세부 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⑤ 직원 등의 임명, 위촉, 복무,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 4 장 이 사 회

제 19 조 (이사회 의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소집된다.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②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. 이사장 유고시에는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.
-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일을 정하고 그 [3]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 20 조 (이사회에 부의할 사항)
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
1. 이 법인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
3.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
4. 재산관리
5. 회원의 제명
6. 각종 규약의 제정과 변경
7. 이 정관 및 총회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인정한 사항

제 21 조 (이사회 의결)
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.
-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 5 장 총 회

제 22 조 (총회의 종류)

- ① 총회는 보통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한다.

-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이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에서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.

제 23 조 (총회의 소집)

- ①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- 1.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
 - 2. 보통회원과 명예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
 - 3. 감사가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
-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일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각 보통회원과 명예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
- ④ 총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. 이사장 유고시에는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 24 조 (총회의 결의방법)

- ① 총회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- ② 총회의 의결은 민법 또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한 총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 25 조 (서면에 의한 결의)

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 또는 임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.

제 26 조 (총회에 부의할 사항)
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정관의 변경
- 2.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
- 3. 본 법인의 기본활동 방침 결정
- 4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- 5. 전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안 승인
- 6.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확정
- 7. 감사보고서의 승인
- 8. 회원의 회비 및 차입금 최고한도액 결정
- 9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 27 조 (총회 의결 제척사유)

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 28 조 (총회의 의사록)

-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6 장 재산 및 회계

제 29 조 (재산의 종류)

-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2종으로 한다.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.
 1. 별지 재산 목록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
 2.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
 3.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할 것을 결의한 재산
- ③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이를 보통재산으로 한다.
- ④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30 조 (재산의 관리)

- ① 기본재산은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할 수 없다. 기본재산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이 법인의 재산 중에서 현금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인의 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.

제 31 조 (재정)

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.

1. 회비
2.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입금
3. 후원 및 기부금
4. 기타 수입금

제 32 조 (회계연도)

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.

제 33 조 (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)

- ① 이 법인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연도별 결산은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감사보고서, 업무현황 및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총회 승인사항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후원사업과 관련된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.

제 34 조 (잉여금의 처분)

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.

제 35 조 (회계의 구분)

이 법인은 수익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특별 회계를 둘 수 있다.

제 36 조 (수익금의 사용)

전조의 특별 회계에서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사회 결의로써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 7 장 정관의 변경 및 잔여재산

제 37 조 (정관의 변경)

이 정관은 총회에서 총회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주무관청의 감독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 38 조 (해 산)

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9 조 (잔여 재산의 처분)

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주무관청의 감독하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.

보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.

서기 1997년 3월 1일 제정

서기 2005년 5월 24일 개정

서기 2008년 6월 29일 개정

서기 2009년 6월 21일 개정

서기 2014년 4월 1일 개정

○ 현)임원현황

연 번	직위	성 명	주 소	비고
1	대표 이사	김요셉	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73-6	
2	이사	이정환	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벽산빌라 3동 302호	
3	이사	이현수	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117번길 14 609동 1003호	
4	이사	홍범기	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145번길 73 수원아이파크시티 309-604	
5	이사	이계원	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152번길 24. 2202-2004	
6	이사	윤철수	용인시 기흥구 흥덕3로 20 신동아파밀리에 1205-1601	